

의안번호	제 451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월 일 (제 회)

2017년도 충북연구원 출연 계획(안)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6년 9월 27일

2017년도 충북연구원 출연 계획(안)

의안 번호	45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. 9. 27.

제안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출연목적

-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충북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도정현안에 대한 조사·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해 설립·운영하는 (재)충북연구원의 운영재원 지원

출연 예정액 : 8,150,000천원(도비 100%)

- 출연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2항
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2항
- 산출근거 : 충북연구원 청사 신축 4,800,000천원
충북연구원 운영 3,000,000천원
특별연구조직 운영(공공투자분석센터) 350,000천원

출연계획 (단년·반복사업)

(단위: 천원)

구분 (기준보조율)	2016년			2017년 (C)	증감 (D=C-A)
	계(A+B)	당초(A)	추경(B)		
도비(100%)	2,750,000	2,750,000	-	8,150,000	5,400,000

※ 증액(54억원) : 연구원 청사 신축비 48억 + 연구원 운영비 절감 △26억 + 2017년 연구원 자체 수입 감소분 86억

1 출자·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정책기획관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정책관리팀	송재구	이선호	반안나	2134

기관명	충북연구원				
출자·출연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 장 : 정초시 (*재단법인) ○ 일반현황 : (소재지)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-1 (조직인원) 2실, 4부, 2과, 2분원 / 정원 39명, 현원 31명 (주요기능) 지역현안 정책개발 및 조사·연구 				
출자·출연 사업비	○ 출연 예정금액 : 8,150,000천원(도비 8,150,000천원)				
	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천원)				
	구 분 (기준보조율)	2016년			2017년 (C)
	계(A+B)	당초(A)	추경(B)		
도비(100%)	2,750,000	2,750,000	-	8,150,000	5,400,000
<p>* 전년대비 증감내역(5,400백만원 증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원 청사 신축비 출연금 총당분 4,800백만원 - 연구원 운영비 절감 △260백만원 - 연구원 자체 수입 감소(이자수입 및 수탁과제 전입금 감소 등) 860백만원 					
출자·출연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원 청사 신축비용 출연(도시계획도로 확장에 따른 이전 건립) ○ 수탁과제 전입금 감소, 이자수입 감소 등 전체적인 수입감소가 예상되어, ○ 연구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 수행을 위해 출연금 증액 지원이 필요함 				
근거법령	<p>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2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.</p> <p>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2항 ② 도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</p>				
지도감독 부서인견 (중 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북연구원 기능 활성화를 통해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, ○ 충북 싱크탱크로서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및 활발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. ○ 특히, 2017년도에는 연구원 청사 신축비용 출연, 기금원금 감소 및 금리하락에 따른 기금 이자수입 감소 등 자체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바, 충북연구원 본연의 연구기능 수행을 위해 출연규모를 금년대비 상향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				
첨부자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연기관 현황 3. 출연 사업계획서 				

1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경영평가 결과 및 시사점

- 2016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: **A등급 (89.47점)**
 - 리더십, 책임경영, 경영시스템, 연구과제 수행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음.
 -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, 중장기 발전계획의 구체화, 홍보활동 등은 개선 필요
 - ☞ 생산적 일자리 참여, 6차산업활성화지원, 사회서비스 지원, 도민경제교육, 재난안전 연구 등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활동 강화
 - ☞ 중장기발전계획 수정 등 경영방침과의 연계성 강화로 내·외부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
 - ☞ 연구성과 확산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계획 수립·운영

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충북연구원 출연금은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, 도정 현안에 대한 조사·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
- 특히, 2017년도에는 연구원 청사 신축에 따른 추가 출연이 필요하며, 기금원금 감소 및 금리하락에 따른 기금 이자수입 감소, 계약방식 변경(수의계약→입찰 등)에 따른 수탁과제 전입금 감소 등으로 자체세입이 금년대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
- 충북연구원의 충북 싱크탱크로서의 기능강화와 더불어,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금년대비 출연규모를 상향하여 출연하는 것이 필요함

3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

(단위:천원)

구 분	2016년 (C)	2017년 예산안			전년대비 증감액 (B-C)
		기관 요구액(A)	실과 산정액(B)	증감(B-A)	
출연금	2,750,000	8,310,000	8,150,000	△160,000	5,400,000

4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

사업목적 명확성	출연의 타당성	유사 중복성	사업방식 효율성	사업의 시급성	투자대비 효과성	재원분담 적절성
여	여	부	여	여	여	여

1-2 출자출연 기관현황

설립근거	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			전화번호 : 043-220-1141 홈페이지 : www.cri.re.kr			
주요연혁	- 1990.05.15. 충북경제연구소 개소 - 1994.12.27. 충북개발연구원 명칭변경 - 2011.03.24. 충북발전연구원 명칭변경 - 2016.03.31. 충북연구원 명칭변경		기관형태 (출자, 출연)	출연기관			
인원현황 (15.12.31.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비정규직			
	81 명		31명	50 명			
임원 (15.12.31 기준)	이사장	이○○	충청북도지사	재임기간			
	당연직이사	고○○	충청북도 행정부지사	재임기간			
	당연직이사	서○○	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	재임기간			
	당연직이사	이○○	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	재임기간			
	당연직이사	조○○	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	재임기간			
	당연직이사	연○○	신한은행 충북지역본부장	재임기간			
	당연직이사	정○○	충북연구원장	재임기간			
	선임직이사	노○○	청주상공회의소 회장	2013. 04. 03 - 2016. 04. 02			
	선임직이사	손○○	서원대학교 총장	2014. 07. 23 - 2017. 07. 22			
	선임직이사	한○○	충북지역개발회 회장	2014. 07. 23 - 2017. 07. 22			
	선임직이사	남○○	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	2014. 07. 23 - 2017. 07. 22			
	선임직이사	이○○	충북여성단체협의회 회장	2014. 07. 23 - 2017. 07. 22			
	선임직이사	안○○	청풍로펌 변호사	2014. 07. 23 - 2017. 07. 22			
	선임직이사	유○○	미래농어촌개발연구원 대표	2014. 07. 23 - 2017. 07. 22			
	선임직이사	주○○	청주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	2014. 07. 23 - 2017. 07. 22			
	선임직이사	이○○	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	2014. 07. 23 - 2017. 07. 22			
	선임직이사	백○○	영동대학교 교수	2014. 07. 23 - 2017. 07. 22			
	선임직이사	정○○	세명대학교 경영행정복지대학원장	2014. 07. 23 - 2017. 07. 22			
	당연직 감사	송○○	충청북도 정책기획관	재임기간			
	선임직 감사	김○○	공인회계사	2014. 07. 23 - 2017. 07. 22			
주요기능	-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정책 수립 -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- 국내·외 각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및 각종 정보·자료의 수집 및 제공						
자본금 ¹⁾ (단위:백만원)	10,020			출자·출연액 (단위:백만원)	8,720	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14	2015	2016	재무현황 (백만원) '15.12.31기준	자산	12,422
	예산액 ²⁾	3,204	4,661	4,866		부채	1,886
	지자체 지원액 ³⁾	2,000	2,750	2,750		자본 ¹⁾	10,536
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'15.12.31기준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
	6,957			7,031		△ 74	

1) 자본금은 자본(자산-부채)의 한 부분이며, 자본은 자본금, 자본잉여금,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

2)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

3) 해당 기관 예산액(2) 번항목)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

1-③ 출자·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충북연구원 운영 지원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정책기획관		출연	8,150,000천원(도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 대처 및 도정 정책대안 제시
- 도정 현안에 대한 조사·연구 및 지역발전 견인 정책개발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충북연구원 운영비 지원
- 사업기간 : 2017. 1 ~ 12월
- 출연금액 : 8,150,000천원(도비 100%)
- 주요내용 : 충북연구원 연구사업 및 청사 신축(이전건립) 지원
- 출연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2항
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2항

□ 산출기초

- 충북연구원 청사 신축 4,800,000천원
- 충북연구원 운영비 3,000,000천원, 특별연구조직 운영비 350,000천원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합계	'09년	'10년	'11년	'12년	'13년	'14년	'15년	'16년
출연금	15,033	1,600	1,300	1,300	1,600	1,733	2,000	2,750	2,750

□ 기대효과

- 도정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정책대안 제시
- 도정 및 시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견인

□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연구원 청사 이전 건립 차질에 따른 안정적 연구환경 확보 어려움
- 운영비 부족으로,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수탁사업 치중 우려
- 정책대안 제시 등 도 연구기관으로서의 정책개발 기능 수행한계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<신설 2014.5.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
부칙 <법률 제12687호, 2014.5.28.>

제6조(출자·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제13조(운영재원)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

1.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
2.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.

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<전문개정 2011.5.30.>

□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6조(운영경비)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기금운용의 과실수입
2. 용역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
3. 출판물 판매 대금
4. 그 밖의 수입

② 도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